

2009. 12

독도연구 2009-03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2009. 12.

박 병 섭

As a conclusion, Seok-do (石島) in the “Imperial Ordinance No.41” was pronounced as Dok-seom and its Chinese character changed to “独島” (Dokdo). The island was effectively utilized by residents in Ulleungdo around the time. While, Usando was missed by residents in Ulleungdo and Korean officials despite of several survey.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하여 새로운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규정된 석도를 한국의 연구자는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직접 증명할 자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왜 칙령에 석도라는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 칙령 41호에는 그 때까지 수많은 지도나 관찬사서 등에 기술된 우산도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칙령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라는 의문이 풀려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는지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있다. 한국이 독도를 유효하게 활용한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은 울릉도 어민의 활동에 있다. 당시 독도까지 실제로 간 적이 있는 사람은 정부 관원이 아닌 어민들이었다. 그 어민들의 활동을 통하여 석도 즉, 독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으므로 어민의 활동을 통하여 위의 의문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2. 연구 범위와 자료

연구 범위는 시기적으로 조선의 개국(1876)으로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1910)까지로 한다. 이 기간의 어업을 종래의 시기 구분에 따라 청일전

쟁까지를 제1기, 그 후부터 러일전쟁까지를 제2기, 그 이후를 제3기로 한다. 각 시기를 울릉도의 어업에 맞춰 세분화한다.

자료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 외교사료관, 일본 국회도서관, 야마구치현(山口県)문서관 등의 소장 자료를 조사한다.

3. 선행 연구와의 차이

한말의 울릉도·독도 해역의 어업을 상술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단지 통사적인 어업사 중에서 간단히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련하여 울릉도·독도의 어업에 언급한 연구도 있으나, 1902년 이후를 간단히 적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일본의 지방사 연구의 성과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02년 이전도 포함하여 야마구치현이나 오이타현(大分県), 시마네현(島根県) 등의 지방사 연구의 성과 등도 충분히 고려한다.

제2장 울릉도에서의 어업

1. 제1-1기 일본 어민의 침어기(1876~1883)

오랜 세월 공도 정책이 실시되어 왔던 울릉도에 일본인이 제1-1기에 침입하여 목재의 도벌이나 밀어를 행하였다. 일본인의 침입은 일본 해군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그 즈음부터 야마구치현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침입하여 느티나무 등을 도벌하거나 전복을 채취하는 자가 급증하여 그 수는 약 4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침입 사건은 조선 정부가 알게 되어 정부가 일본에 항의한 결과, 일본 내무성은 1883년에 울릉도의 일본인을 전원 쇄환하였다.

한편, 조선인의 어업은 한말기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봄에 전라도에서 울릉도로 와서 미역을 채취하고 돌아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미역 이외의 어업은 보잘 것이 없었다.

2. 제1-2기 통상장정에 의한 어업기(1883~1894)

1888년에 조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통상장정에 의하여 일본 어민이 강원도 등 4개도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이타현의 잠수기 어업자는 즉시 울릉도에서 전복을 땀다. 그들은 울릉도에 축실(築室), 즉 임시 오두막집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적발되었다. 다음 해인 1889년에도 오이타현의 어민이 울릉도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런 사건의 여파로 제1-2기에 일본인 어민은 울릉도에서 어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업은 산발적이었다.

3. 제2-1기 일본인의 불법 정주기(1894~1899)

청일전쟁 이후, 목재 도벌을 위하여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의 거주가 일상화된 제2-1기에는 일본인 어민도 불법이지만 울릉도에서의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어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설치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졌다. 게다가 어획물을 수출할 때 수출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울릉도 도감으로부터 거주를 보증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어업이 번창하였는데, 그 중에서 잠수기 어업자 등이 전복이나 우뚝가사리를 대거 남획하였다.

4. 제2-2기 일본 정부의 정주 추진기(1899~1904)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거주가 울릉도 도감에 의해 허용되었다고 해도

한국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등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인 주민에게 일단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울릉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일본인 중에는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도 많았다. 한편, 일본 정부도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일본인의 영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일본 어민은 울릉도에 안주하여 작업장을 설치하고 어업을 지장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의 어업은 전복이나 해조 채취, 상어잡이 등이었다.

5. 제3기 일본 제국의 침략 강화기(1904~1910)

러일전쟁이 끝나자 울릉도의 일본인은 급증하였다. 어업은 전복이나 해조 채취 이외에 오징어잡이가 번성하였고 1904년부터는 수출의 수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인도 일본인에게 배워 1907년경부터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게 되었다.

제3장 독도에서의 어업

1. 상어잡이

독도 주변에서는 많은 물고기종류를 볼 수 있지만 주변 바다는 깊어 그 당시의 기술로는 물고기 잡이가 어려웠다. 게다가 섬에는 어선을 계류할 장소나 음료수가 없어서 어업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물고기는 상어였다. 오이타현의 어부들은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1899년경부터 독도에서 상어잡이를 하여 상응하는 어획을 하고 있었다.

2. 전복 채취

1899년 울릉도에서의 전복 채취가 불황이었던 탓인지 그 여파로 야마구치현의 잠수기 어업자가 양코도(독도)로 출어하였다. 또한, 1902년에는 울릉도에서 출어하여 독도에서 전복을 따고 4~5일 만에 돌아왔다. 그 어민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울릉도에 거주하는 어민이었다.

3. 강치잡이

1903년에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에서 시험적으로 강치를 잡았는데 1904년부터는 울릉도 및 오키도(隱岐島)를 기지로 하는 강치잡이가 행해졌다. 1904년 및 1905년에는 울릉도의 한국인도 일본인과 공동으로 강치잡이에 출어하였다. 1906년 이후에는 독점적으로 오키의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가 강치잡이를 하였다.

제4장 울릉도 주민의 독도 인식 및 이용

1. 칙령 41호 이전의 독도 인식과 활용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독도에서의 전복 따기나 상어잡이를 통하여 독도가 상세하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울릉도 주민 사이에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는 의식이 확실히 정착되었다. 그것이 칙령 41호에 반영되어 울도군 관할지역에 석도(독도)가 기재되었다. 다만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 이전에 어업을 한 어민은 일본인이며, 한국인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 일본인 주민이 울릉도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해명한다.

2. 칙령 41호 이후의 독도 인식과 활용

1904년부터 한국 어민이 일본인과 공동으로 독도로 출어하여 강치 잡이를 하였으므로 새 군수 심홍택도 독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군수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시찰단’이 울릉도에 온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본군 소속의 독도가 외양 100여 리 밖에 있다”고 보고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속도이며 군수의 관할 하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일본 영사관도 독도를 일관되게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취급하여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일본 영사관은 울릉도 주민의 어업 활동을 통하여 리양코도(독도)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당연하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한 후에도 변함없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영토 편입’을 관보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도 몰랐는지 계속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 즉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사관의 보고를 『통상휘찬(通商彙纂)』에 전제한 외무성 당국자도 같은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고는 그대로 일본 『관보』에도 게재되었다. 『관보』 담당자마저 랑코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되었던 것이다.

3. 독도의 호칭에 관한 고찰

관음도나 죽도(죽서) 등 울릉도 주변의 섬은 호칭명과 필기명이 달랐다. 1947년에 독도에 파견된 과도정부 독도 현지조사단과 조선산악회 울릉도 조사단과의 합동조사에 참가한 인사들은 독도를 ‘독섬(Dok Seom)’으로 표기하여 공표하였다. 또한, 1948년에는 영어로 ‘Docksum’으로 표기된 것이 미국의 공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호칭은 「바위(돌) 섬」을 의미하며 칙령 41호의 「석도」와 통한다.

4. 석도의 호칭에 관한 고찰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석도의 한국어 발음과 서항도(관음도)의 일본어 발음이 닮았다는 이유로 석도를 관음도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수로부의 해도 306호에 의하면, 서항도의 발음은 ‘Somoku Somu’이므로 석도를 서항도로 한 시모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인용하는 『한국지명총람』에서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에 있는 석도 및 충도리에 있는 석도의 호칭이 ‘독섬(Dok Seom)’임을 밝혔다. 이 중에서 충도리에 있는 석도의 호칭이 ‘독섬(Dok Seom)’임은 일본 수로부 『조선 수로지』에서도 짐작된다.

5. 우산도 탐색 실패에 관한 고찰

1900년경 울릉도 주민들은 우산도가 울릉도 동북쪽 4~50리(16~2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전설을 믿고 우산도 탐색을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우산도를 잃고 있었다. 우산도는 서울 등 중앙에서는 황성신문 기사에 보이는 것처럼 죽도(죽서) 이외의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관념적인 존재에 머물 뿐, 현지 울릉도에서는 구체적인 위치 등이 확실하지 않은 전설의 섬이었다. 그 때문에 우산도가 독도라고 비정하지 못해 칙령 41호에 기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제5장 결론

근대에 들어서 독도는 울릉도 주민에 의한 전복채취나 상어잡이를 통하여 상세히 알려져, 일본인에게는 리양코도 혹은 양코도, 한국인에게는 독섬 등으로 불렸다. 독섬은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울도군을 설치

할 때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되어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명시되었다. 그 후에도 울릉도 주민에 의한 어업 활동이 계속된 결과 한국의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당국자까지도 리양코(량코)도, 즉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다. 그 인식은 일본이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편입한 후에도 변함없었으며 관보에도 기재되어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가 된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876년 조선은 개국하여 일본이나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 무렵, 거의 공도(空島)였던 울릉도로 일본 관민이 일체가 되어 침입을 시작하였다. 그 대책으로 조선 정부는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전환하여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 성과가 서서히 열매를 맺어 인구도 늘었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인도 울릉도에 불법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울릉도의 개척이 진전된 결과 울릉도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하여 울도군으로 승격하였고, 그 관할 구역이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되었다. 석도의 이름은 울릉도 주민의 어업에 의하여 독도가 구체적으로 인식된 결과 현지 주민에 의하여 명명된 듯하다. 이처럼 한말 울릉도 해역의 어업은 독도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에 대한 의문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규정된 석도를 한국의 연구자들은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직접 증명할 자료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칙령에는 수많은 지도나 관찬서 등에 기술되고 있었던 우산도의 이름이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편,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칙령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라면 독도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韓末期の鬱陵島・独島漁業
- 独島領有權の観点から -

2009年 12月 29日 印刷
2009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姜 涼 熙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 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